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산정보과

(2016. 10. 27)

마포구의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은 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6년 10월 19일(수)
- 제 출 자 : 강희향 의원 외 8명

3. 의안 회부일자

- 2016년 10월 20일(목)

4. 관계법규

- 「개인정보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정이유 >

관내 범죄예방과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1조 ~ 제3조)
- 나. CCTV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 다.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회의 및 수당(안 제5조 ~ 제8조)
- 라. 비밀유지 규정(안 제9조)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로부터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 보장을 위하여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동(同) 조례는 제1조 목적부터 제9조 비밀유지까지 본문 9개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 제3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범죄예방 및 주민생활 안전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할 수 있고, 설치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필요 시 경찰서장과 협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 ~ 제8조에서 마포구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회의 및 참석위원 수당을 규정하였고
안제9조에서는 CCTV 설치 및 관리 업무 및 운영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부칙(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에서는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음

- 동(同) 조례안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녕과 재산을 지키고 범죄 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의 설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방범용 CCTV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검토의견으로 동(同) 조례안은 2016.10.20.~10.24.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범죄예방 및 주민생활 안전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하고 마포구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회의 및 참석위원 수당을 규정하였고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비밀유지를 규정하였으며, 현행 CCTV를 설치 대상으로는 구 관내에 범죄예방 및 주민생활 안전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나, 담당부서에서 유의할 사항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현저하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방범용 CCTV 설치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하는 등 개인 사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관 계 법 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07호, 2016.3.29., 일부개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